

의안번호	2205455
의 퇴 인	서천호 의원
회 답 일	2024.11.25.
추계번호	24E504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어선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선수리용역에 대해 2028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5년 196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2,739억원(연평균 54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2,046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693억원 감소 예상
 - 다만, 동 추계액은 어선 수리비에 대한 표본조사인 「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」(수협중앙회)를 바탕으로 어선 수리비가 어선 수리용역 매출액(공급가액)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1] 어선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세수효과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196	-783	-783	-783	-196	-2,739	-548
- 국세(74.7%)	-146	-585	-585	-585	-146	-2,046	-409
- 지방소비세(25.3%)	-49	-198	-198	-198	-49	-693	-13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7호	○ 어선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신설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7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어선 수리용역 매출액(공급가액)이 어선 수리비와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최근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
 - 어선 수리비는 수협중앙회의 「어업경영자금 소요액조사」 자료 활용
 - 주무 부처(해양수산부)에 따르면, 현재 어선건조·개조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어선 수리를 포함한 매출액 통계를 정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
 - 정부는 어선건조·개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·육성하기 위하여 ‘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제’를 추진(2024년 9월 「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국회 제출)
- 개정안은 부칙을 참고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
 -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므로, 징수기준을 반영하여 첫 시행연도인 2025년 세수효과는 3/4분기 해당액만 추계하고, 마지막 시행연도인 2028년 4/4분기 세수효과는 익년도(2029년)에 발생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(추계방법) 세수효과는 ‘어선수리용역의 추정 공급가액 × 세율 10%’로 추계

○ 공급가액은 2021~2023년 어선 수리비 연평균 7,826억원 적용

[표 2] 어선 수리비 현황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연평균
어선 수리비	7,645	8,123	7,710	7,826

주: 연근해·내수면어업(선체수리비·기관수리비), 양식(원해)어업(보조선비), 정지망·구획·내수면 등 합산
자료: 수협중앙회(「어업경영자금 소요액조사」)·해양수산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어선수리용역에 대해 2028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5년 196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2,739억원(연평균 54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2,046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693억원 감소 예상

○ 다만, 동 추계액은 어선 수리비에 대한 표본조사인 「어업경영자금 소요액조사」(수협중앙회)를 바탕으로 어선 수리비가 어선 수리용역 매출액(공급가액)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3] 어선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세수효과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196	-783	-783	-783	-196	-2,739	-548
- 국세(74.7%)	-146	-585	-585	-585	-146	-2,046	-409
- 지방소비세(25.3%)	-49	-198	-198	-198	-49	-693	-13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